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상업유통 분야의 변화동향과 전망

김 영 윤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
홍 순 직 (현대경제연구원 북한팀장)

◆ 논문 요약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식량, 소비재, 집세 등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정부 당국의 무상 또는 저가의 분배체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국정가격의 현실화는 유통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농민시장’의 ‘시장’으로의 개칭이나, ‘종합시장’의 개설만으로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나, 유통시장의 변화는 북한 경제개혁의 시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의 임의적 자율적 처분 가능성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계지출 습관에 익숙하게 만들 것이며, 물질적 보상이 적용되는 임금노동제를 정착시킬 가능성이 크다. 남한은 이와 같은 북한 유통분야 변화 움직임이 제품생산 및 공급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북 지원사업 및 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대북 지원 물품이 생필품 위주로 구성 종합시장 등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생산 유통 판매가 결합된 일관형태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협사업에서의 임금노동제 정착을 위해 임금의 직접지급 및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및 평양 등지에 남북한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대북한 내수시장 진출에 대비, 남북한 직교역 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역상당소 설치, 우편 통신망 연결, 육·해상 직접수송 및 물류기지 구축을 비롯, 직교역 대상 물품 및 임가공 품목의 범위, 원산지 확인, 대금결제방식에 대한 합의도출이 요구된다.

I. 서론

북한 상업의 본질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 다시 말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소비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노동분배는 화폐라는 형식을 통해, 그리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서 월급(생활비)을 받아 국영상점에서 식량 및 생활용품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하여 생활을 영위한다. 국정가격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급물자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그러나 2002년 7월 북한은 기존의 국정가격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후 북한에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변화 속에는 경제관리에서의 실리보장을 추구하고, 추가보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생산물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만고조와 암시장가격의 폭등 등을 동반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 문제는 상업·유통분야가 그대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2003년 현재 북한의 상업·유통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2004년의 북한 상업·유통분야를 전망하고자 한다. 현황과 전망에 앞서 먼저 북한 상업유통분야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본 분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다.

II. 상업·유통 부문별 현황

1. 상업유통 관리기관과 조직

북한에서 상업·유통은 국가차원의 계획대상 분야다. 상업·유통분야의 계획(‘상품유통계획’과 ‘수매’ 및 ‘양정계획’ 등)은 내각의 상업성에서 작성되고, 국가계획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이 결정되면 상업성에 하달되고 상업성은 다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수립하여 「도매관리국」 및 「지방상업지도국」을 통해 각 도·시의 상업유통기관 및 기업에게 하달한다. 도매관리국은 당의 상업정책과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에 의거 ①상품유통관리사업, ②유통상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③산하부서인 「지구도매소」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

1) 도매관리국 산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처는 상품의 유통계획과 전망계획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산하기관이 작성한 계획과 그 집행

도매소에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 도에 道도매소, 시·군에 상품공급을 관할하는 지역도매소가 있다. 그 밖에도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다과도매소,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 제품 품종별로 전문화된 특수도매소가 있다.

중앙도매소는 생산기업소에서 생산된 상품을 인수 확보하여 출하도매소 또는 지구도매소로 보낸다. 각 도의 도매소는 도매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 생산기업소에 제품을 출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매소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기본단위다.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도매기업소가 생산기업소로부터 확보한 상품을 소매기업소에 공급하면 소매기업소는 이를 접수하고, 배정된 상품을 상업망을 통해 공급한다.

북한의 상업망은 주민들의 생활조건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 전문상점과 일반상점, 특제품 취급상점, 대규모 상점과 소규모 상점, 직장상점과 위탁상점 및 백화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화점은 규모가 큰 상점으로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각 리·동에는 직매점 또는 상점(매대) 등이 있다. 편의시설로 여관, 식당, 이발소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상업분야의 관리체계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2003년에도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 북한 평양에는 상업망 확보를 위한 상업시설 조성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의 영광거리, 승리거리, 칠성문거리, 개선문거리, 버드나무거리에 현대적인 상업시설들의 ‘종합시장’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있으며²⁾ 가전제품과 주택인테리어전문 용품을 판매하는 외화상점도 생겨났다. 약 1천평방미터 규모의 이 상점에서는 바닥재료, 니스 페인트류, 창문 커튼, 소파, 도자기, 변기, 주방설비 등 주택 내부 장식용 재료와 가전제품을 취급하고 있

을 지도·통제한다. 부기처는 상부에서 배정한 예산의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품유통에 따른 상품배정 및 손익관계를 담당하며 운수처는 수송계획을 작성하고 제반 수송업무를 지도·통제한다. 그리고 교류처는 상품교류 업무를 수행·통제, 섬유처 및 식료처는 섬유류 상품과 식료품에 대한 배정업무와 산하 기업소별 소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2) 『로동신문』, (2003. 8. 24)

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외국인에게 평양 시내 상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에 평양 창광노래방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의 인사나 기업이 합작 형태로 투자할 수 있었던데 비해 크나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업형태와 상업관리체계

가. 상업형태

북한의 상업은 도매상업³⁾, 소매상업⁴⁾, 사회급양⁵⁾ 및 수매⁶⁾형태로 이루어진다. 도매상업은 중앙도매소, 출하도매소, 지구도매소와 전문도매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매상업은 상품이 생산기업소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매상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상품거래가 대량의 규모로 생산기업소와 상업기업소간 또는 상업기업소들간에 이루어지는 점이다.

북한의 도매상업을 지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상업성의 「도매상업관리국」, 각 도인민위원회의 「도매상업관리처」가 있다.

소매상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직접 공급하고 봉사하는 상업의 기본단위로 상품이 유통영역에서 소비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소매상업은 소비품 공급계획⁷⁾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상품유통계획」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다. 「소매상품유통계획」에는 상품판매계획, 상품보장계획, 상업망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매가격은 국정소매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두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3) 생산과 소매상업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생산기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 소매상업에 대해 공급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4) 근로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5) 근로자들에게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하는 소매사업의 한 형태이나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한다.

6) 협동적 소유와 개인소유의 상품을 국가수중에 집중시키는 상업의 한 형태로 농산물 수매가 주를 이룬다.

7) 주민들의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수요를 감안하여 작성된다.

사회급양은 여러 가지 식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북한의 상업부문의 하나다. 근로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소매상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식품을 생산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식당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회급양을 위한 가격결정이나 판매량 등은 지방당국이나 급양관리기관에 의해 직접 통제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식량난과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일반 사회급양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매는 북한이 농산물, 축산물, 농수산물 등과 같은 농업생산물들을 전국적 차원에서 사들이는 상업행위다. 농업생산물은 국가수매망을 통해 사들여져 공업부문 근로자들과 도시주민들에게 공급된다. 수매시 북한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과 일정한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수매량이나 가격은 북한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나. 상업관리체계

북한의 상업은 「상업지도관리체계」⁸⁾와 「상품공급체계」⁹⁾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북한의 상업관리는 행정적 지도기능과 관리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적 지도는 중앙의 내각 상업성에서부터 지방의 도시, 군인민위원회에 이르는 상업행정 부서들이 대상이 된다. 관리는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을 분리, 도매상업은 중앙기구¹⁰⁾에서,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담당¹¹⁾하고 있다.¹²⁾

8) 상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총체

9) 상품확보와 공급기능을 수행한 단위들의 총체

10) 도매상업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생산으로부터 소매상업기업소에 이르는 상품분배의 전 과정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내각 상업성에 도매상업관리부서를 두고, 그 밑에 도도매상업관리부서와 출하도매소, 지구도매소들을 조직해 놓고 있다.

11) 소매상업을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을 지방행정기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한은 각 시·군에 소매상업관리소들을 조직해 놓고 있다. 시·군내에 있는 모든 유통 관련 상점은 이 상업관리소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고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의 상업관리는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 농민시장업 등으로 나뉘어진다. 국영상업은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상업으로 상품유통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운영하에 있다. 중앙당국의 계획에는 상업망의 발전, 상품유통규모, 유통비, 노동 및 기타 활동지표들이 포함된다. 국영상업에서의 상품은 유일가격(국정가격)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협동단체상업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협동단체들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협동단체상업은 협동적 소유(공유)에 기초하여 국영사업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인민적 소유' 형태 이전단계의 상업으로 규정되고 있다.¹³⁾ 협동단체상업은 주로 상품, 화폐자금을 협동적 소유로 하여 생산과 상품유통 등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농민시장은 개인부업경리에 기초한 자유시장 성격의 상업형태다. 농민시장은 국가의 공급능력 부족 부분을 개인들이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민시장에서의 거래는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물품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에서 지역주민들간에 직접 매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¹⁴⁾ 농민시장은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해 기존의 채래식시장('농촌시장')이 폐지됨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농민들이 텃밭 등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농·축산물 등을 매매하는 장소로 기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들어 대규모 식량난 이후 공식 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암거래 형태로 변화되면서 확대되었으며, 2003년 현재 비상설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1,000여개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시장은 현재 북한 상업유통의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2)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 제2권, 사회과학출판사(1985), p. 59.

13)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 제1권, 사회과학출판사(1985), pp. 244~245.

14) 「김일성저작집」, 제23권, 조선로동당출판사(1983), p. 465.

3. 유통 형태와 체계

북한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유통형태는 첫째,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 둘째, 협동단체기업소나 개인부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 셋째,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국방, 치안, 공공시설관리, 사회보장 등), 넷째, 농민시장에서의 거래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영기업소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①투자재 형태로 다른 국영기업소에 판매(생산비에 국영기업소의 이윤, 거래수입금을 포함한 산업도매가격으로 결정), ②협동단체기업소에 중간재나 투자재 형태로 판매, ③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매가격에 거래수입금과 사업부가금이 첨가된 소매가격), ④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의 생산에 투입(가격은 생산원가로만 구성) 형태로 유통된다.

그 다음 협동단체기업소와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한 재화는 ①농민시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유통(거래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 혹은 생산 및 판매과정에 투입된 중간재, 감가상각, 협동단체 또는 개인의 잔여소득으로 구성)되거나, ②국가수매기관을 통해 국영기업소의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거나 국영기업소의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투자재의 형태로 구매(거래가격은 수매가격의 형태를 띠고 있음), ③소비자나 다른 개인생산자, 협동단체기업소에 소비재·투자재 또는 중간재로 판매(거래가격은 수매가격에 거래수입금과 사업부가금을 첨가하여 얻는 소매가격)되는 형태로 유통된다.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는 무상으로 공급되나 그 가격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중간재, 감가상각, 노동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농민시장에서의 거래는 개인간 또는 협동단체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국경지역에서 개인간에 성행되는 암거래, 외국상인과 거래되는 밀무역 등의 형태가 있다. 이 때 적용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매매 당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4. 가격결정체계

가. 가격의 종류

북한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되나 국가는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가 소매상품에 대해 지불하는 소매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격에는 도매가격, 산업도매가격, 상업기관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이 있다. 도매가격은 상품 또는 상품적 형태를 지닌 생산수단이 국가기업소간에 유통될 때 적용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원가(생산비용, 감가상각비, 임금 및 행정관리비)에 기업소의 순소득(이윤)이 합쳐져 산출된다.

산업도매가격은 도매가격에 간접세 성격을 띠고 있는 도매수입금을 합친 것으로 주로 원목과 전력, 국영농목장에서 생산되는 농업생산물에 적용된다.

상업기관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매매수입금, 수송비, 인건비, 포장비 등 유통비를 포함하고 이윤을 부가한 것으로 보통 개인소비자가 상점에서 소비재를 구입할 때 적용된다. 소매가격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제품과 학용품 등을 대상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싸게 하고, 기호품 등 공급이 부족하거나 보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높게 책정된다.

수매가격은 농축산물을 수매할 때 책정되는 가격으로 계획수매가격과 자유수매가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계획수매가격은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정되는 가격인 반면, 자유수매가격은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다.

운임은 수송서비스에 지불되는 대가로 생산물 가격과 같이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결정된다. 운임은 일반적으로 원가와 이윤으로 구성된다.

한편, 요금은 각종 봉사활동에 대해 기관·기업소와 주민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다. 전력, 우편, 통신시설, 인프라, 인쇄시설이용, 수리의뢰 등과 같은 곳에 부과되며, 생산적 요금과 비생산적 요금으로 나뉘어진다. 생산적 요금은 원가와 이윤으로, 비생산적 요금은 원가와 이윤 거래수입금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상의 가격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유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업유통비는 ①생산의 연장이나 완성과 관련된 비용(예: 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제품의 선별 및 추가적 가공비용 등)과 ②상품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지출된 순유통비(예: 상업근로자들의 생활비, 상품광고비, 감가상각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사무비, 통신비, 여비 등)로 구분된다.

나. 가격결정체계의 개혁

가격은 중앙 및 지방행정단위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은 내각의 가격제정위원회(가격제정총국)이며, 지방행정단위는 도행정위원회다.

북한은 지방공장에 대해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장은 국가가 정해주는 가격제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상품가격을 설정하고 생산·판매할 수 있다.

2002년 7월 북한은 가격 및 임금을 대폭인상하고 가격설정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국가계획수립 권한의 일부를 하부에 위임하고 공장 기업소에도 제한적인 경영자율성을 부여했다. 원·부자재시장을 개설¹⁵⁾하였는가 하면, 분배의 차등화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체계의 개편을 단행했다.

쌀 1kg의 국정가격은 종전의 8전에서 44원으로 558배, 옥수수 가격은 6전에서 24원으로 400배 인상됐으며, 평양의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은 종전 10전에서 2원으로 20배 인상되었다. 평양~청진간 철도요금도 종전 16원에서 590원으로 37배 인상되었으며, 주택사용료도 지금까지 한 채에 5~10원 정도였으나, 이를 평당 미터당 15전에서 월 6~15원으로 인상, 웬만한 집 한 채의 사용료가 몇 백원이 되었다.

15) 북한에는 원래 원·부자재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이 개설된 이후 지정된 품목에 한해 공장·기업소가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금결제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거래시 ‘화폐의 무현금유통’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주요물가 개혁 내용

품목	종전가격	인상가격	인상폭
쌀(kg)	8전	44원	550배
옥수수(kg)	6전	24원	400배
돼지고기(kg)	7원	180원	26배
계란(개)	17전	8원	47배
냉면(그릇)	10원	150~200원	15~20배
세수비누(개)	2원	10원	5배
선풍기(개)	100원	2,000원	20배
시내버스·지하철요금	10전	2원	20배
철도요금(평양-청진)	16원	590원	37배
전기사용료(kWh)	3.3전	2.1원	66배
주택사용료(m ²)	15전	월6~15원	40~100배
송도유원지(입장료)	3원	50원	17배

자료: 자체 취합 정리

한편, 종전 85원에서 110원 사이였던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외무역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월급은 15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광산노동자의 경우에는 무려 4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임금인상과 동시에 북한은 임금의 직업별 기업소별 지역별 그리고 성과급에 따른 차등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표 2> 주요 부문 임금인상 내용(월)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폭
일반노동자·사무원	85~110원	1,800원~2,000원	18~21배
광산·탄광근로자	130~140원	3,000~4,000원	23~29배
대학교수	200원	4,000원~5,000원	20~25배
일반교원	120원	2,880원	24배
의사	80~150원	1,200원~2,250원	15배
군인·특수기관요원	150원~250원	1,500~2,500원	10배
당일군	170원	850원	5배
기자·방송원	150~200원	4,500~6,000원	30배

자료: 자체 취합 정리

과거 북한의 배급제하에서 국가는 식량 소비재, 주택 등을 거의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했으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가격, 집세 등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무상에 가까운 분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쌀 가격은 종전, 물, 전기, 비료 등의 요소투입에 따른 생산원가만을 고려했으나, 경제개선조치 이후부터는 국제시장가격과 국내의 수요·공급요인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만,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Ⅲ.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상업·유통분야의 변화 동향과 문제점

1. 상업·유통분야 변화동향

가. 종합시장의 개설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북한 경제변화의 핵심은 유통구조 및 가격체계의 개선, 임금인상, 지역시장 활성화, 화폐 및 외환관리제도의 변화, 주민들에 대한 세금부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가장 먼저 농·공산품 유통구조개선에 착수했다. 농·공산품의 구매가격을 농민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실제가격에 근접시켜 국가에 의한 상품공급체계와 기능을 회복 확립하려고 했다. 다만, 식량은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하되, 종전과 같이 『량권』을 통해 분배했다.¹⁶⁾

국가 상품공급체계와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은 먼저 장마당의 단속작업을 벌려 장마당의 취급품목을 원래 매매가 가능했던 텃밭 작물에 한정시키는 한편, 식량과 생필품은 국영상점에 집중되도록 했다. 따라서 장마당은

16) 이는 2003년 남한의 식량분배 현장 확인에서도 증명되었다. 식량은 차관, 원조물자에 관계없이 모두 유상으로 분배하며 가격은 킬로당 46원으로 분배되었다. 통일부, 『2003년 식량차관 1차 식량분배 현장확인 결과보고』, 2003. 10. 9, p. 2.

채소나 쌀 정도로 허용하고, 쌀과 공산품 등 지정된 품목 이외의 물건은 일체 거래될 수 없도록 했다. 쌀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국가공급소(국가배급소에서 명칭변경)에 국정가격으로 팔 것을 종용했다. 그 외 제품의 경우는 국영상점에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장마당 취급물품에 대한 단속을 위해 인민보안성 검찰소, 상설 규찰대 등 각종 감사기관이 동원되기도 했다.¹⁷⁾ 이에 따라 일부 상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물품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영상점에 넘기거나, 국영상점에 위탁판매를 시키고 5%의 세금을 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돌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¹⁸⁾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농민시장 기능을 국영상점망으로 흡수 통제하려고 했던 목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곡물과 공산품을 국가상업망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쌀과 공산품들은 더욱 은밀한 형태로 거래되었으며 농민시장의 가격은 종전보다 더 크게 인상되었다.

결국 북한 당국은 2002년 9월경부터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허용하였고,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 허용하였다.¹⁹⁾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했다.²⁰⁾

이와 함께 북한이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전환²¹⁾ 시장을 통제

17) 『연합뉴스』, 2002. 3. 19

18)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 경제리뷰』 제5권 제7호 (2003.7), p. 10.

19) 북한이 종합시장을 설치하고 공산품 유통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2003년 4월 10일자 『조선신보』와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어떻게 시장에서 공산품이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20) 이런 점에서 볼 때 종합시장은 장마당 축소 및 국가유통체계 정상화 조치가 실패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시장은 그 운영 면에서 볼 때, 북한이 기존의 관료적 조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기능을 오히려 확대·인정하는 차원의 조치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농민시장의 종합시장 개편이라는 변화만으로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경제관료·운영체제를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21)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조선신보』, 2003. 6. 16.

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²²⁾ 또한 시장을 경제개혁과 연결하는 의도를 내보이기도 했다.²³⁾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도 사실상 『경제개혁』 조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2003년 3월말부터 평양의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장’은 시장으로 불리어지고 농산물만이 아닌 각종 공업제품이 종합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종합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기존의 농민시장과는 다르게 시장육성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기업으로 하여금 종합시장에 더 많은 물자를 공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기업에 대해 북한은 종합시장 점포를 추첨으로 배정해 합영합작 무역기업의 직매점을 설치하게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종합시장의 ‘시장 사용료’를 판매량에 따라 정확히 받는 등, 시장의 기능을 활용,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²⁴⁾ 종합시장이 기업의 잉여생산물을 내다 파는 차원의 단순 시장이 아닌,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집체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⁵⁾ 종합시장은 평양의 중심거리에 간이 판매대, 상품진열장, 호프집 등의 출현과 함께 대형 마트식 형태로 조성되면서 북한 상업유통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22) “나라에서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양에서도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농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다” 『조선신보』, 2003. 4. 1.

23) “종합시장의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선의 경제개혁의 특징” 『조선신보』, 2003. 6. 16 및 “시장운영이 처음인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전문가 양성 경험도입을 비롯한 협조를 가능한 한 받으려고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03. 6. 10.

24) 『중앙일보』, 2003. 6. 26.

25) 통일부 내부자료, 『금년도 농민시장 운영변화 동향』, p. 3.

26) 『연합뉴스』, 2003. 10. 02.

나. 개별판매 형태의 출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거리에 이동 매대가 재등장하고 있다. 인민봉사총국 『락연합작회사』가 운영하는 새로운 컨테이너식 고정매대가 평양 통일거리에 등장,²⁷⁾ 군밤·군고구마를 1kg당 150원, 5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²⁸⁾ 이동매대는 이미 1970년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가 당국의 규제로 간헐적으로 등장하였다 종전의 매대는 천으로 풍을 씌운 간편한 이동식 매대였으나 새 매대는 간판까지 내건 개조된 컨테이너 매대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풍은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장식을 위해 드리우는 천을 말하는 데 경비절약을 위해 구이로를 전기대신 석탄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매대판매업』은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실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방식을 혁신하려는 경제운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 판매망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판매방식에서 탈피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판매까지를 일관화하여 이윤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 유통시장의 통화량 억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환수된 자금을 경제발전에 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개혁조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데 대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²⁹⁾ 통화량을 환수하는 한편, 물가와 임금의 인상으로 화폐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000원권 등 고액권을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는 500원이 최고액권이었다.

27) ‘상품의 질로 승부-인기를 끄는 군밤, 고구마 매대’ 『조선신보』, 2002. 2. 27.

28) 인민봉사총국 산하 락연합작회사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군고구마를 판매 평양 시내 통일거리에 16개소의 군고구마 매대를 열고 주부들을 채용해 판매에 나선 결과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익금 가운데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이득금’과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사기도 신장시키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3. 4. 29.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함에 대하여-내각홍보,” 『로동신문』 2003. 3. 29.

여기에는 은행이 분기마다 내각의 비준을 받으며 현금유통 및 대부계획을 확립, 현금의 유출입량을 조정함으로써 물가를 통화량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³⁰⁾

대외적으로는 달러화를 유로화로 대외결제수단을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당국은 2002년 12월 1일부터 대외결제수단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하고 자국내에서의 달러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전소에서는 미 달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조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시 각 구역에 외화교환을 전담하는 ‘협동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협동거래소는 1달러를 암시장가격인 890~960원으로 거래하고 있어 민간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³¹⁾

한편, 북한은 2003년 3월 27일 “200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면서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표명했다.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은 “여유화폐 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한”³²⁾ 것이었다. 인민생활공채는 2003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유효기간으로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판매기간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³³⁾이며, 판매방식은 “도, 시, 군들에 비상설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아래에 인민생활공채상무를 두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리, 읍, 구, 동사무소들에 공채협조상무를 조직”³⁴⁾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공채판매와 관련,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채판매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할당 및 헌납

30) 조선신보와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2003. 4. 2.

31) 『연합뉴스』, 2003. 6. 29.

32) 북한은 내각공보를 통해 “인민생활공채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환을 담보하는 국가신용의 형태로서 철두철미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동신문』, 2003. 3. 2.

33) 3개월로 공채판매가 추진되었으나 2003년 8월 18일 조선중앙TV가 공채판매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함으로써 판매사업의 기간연장이 확인되었다. 『조선중앙TV』, 2003. 8. 18.

34) 『로동신문』 2003. 3. 29.

을 유도한 것을 의미한다

인민생활공채는 추첨에 의해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며, 추첨은 첫 2년 동안은 6개월에 한번씩, 그 다음해부터는 1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첨되지 않은 공채원금은 2008년 12월부터 매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채의 유효기간 말까지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인민생활공채는 이자를 주지 않고 추첨해서 당첨금과 원금을 돌려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다³⁵⁾ 당첨상환금은 7등급으로 나누어 1,000원권에 대해 1등은 5만원, 2등은 2만5천원, 3등은 1만원, 4등은 5천원, 5등은 4천원, 6등은 3천원, 7등은 2천원이다. 그리고 500원권의 경우는 1,000원권의 반액, 5,000원권은 1,000원권의 5배로 계산한다

북한의 인민생활공채발행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만연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환수된 자금을 경제발전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즉,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자 공채를 발행, 통화량을 환수하려는 의도로 자본주의 경제학 교과서의 화폐경제이론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자재공급체계의 변화

북한에서 자재는 기본적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거 「국가물자공급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조달·공급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중앙당국의 자재공급계획에 충실하면서도 과부족되는 원자재·부속품을 기업소 및 공장간에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체제로 바꾸고³⁶⁾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조선신보』, 2003. 5. 7.

36)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한테 대하여,” 김정일 10·3 지침, 2001. 10. 3.

2. 당면문제: 공식 상업·유통 기능의 약화와 인플레이션 심화

북한 사회주의 상업유통은 해방 후 실시된 개혁과정에서 국영 및 협동단 체상업이 창설됨으로써 확립되었다. 그 후 농촌경리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거치면서 북한의 상업유통은 국가의 유일적 지배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붕괴되고 북한 내 경제침체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사회주의 상업유통의 기능은 점차 약화된 반면,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인상업은 활성화됐다. 현재 상업유통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사경제부문이 실제 거대한 경제부문으로 자리잡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가배급체계는 붕괴되다시피 했으며, 식량 및 생활용품은 결핍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농민시장’ 의존률이 급격히 증대됨으로써 계획경제체제가 계획경제부문과 사경제부문으로 이원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배급체계의 이완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및 소비지출 양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가의 배급제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 소비했던 식량 및 생활용품의 부족분을 장마당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³⁷⁾ 또한 늘어난 가계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 대부분의 가구는 시장에서 크건 작건 장사나 부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경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영상점만으로는 고질적인 물품 부족을 해소할 수 없어 장마당에서의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 형편이다.

37) 최근 장마당에서는 한국에서 지원한 쌀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도 2003년 8월 초 함북 무산광산연합기업소(무산)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 등 주요 기업소 근로자들에게 처음으로 한국산 쌀이 북한산보다 2원 비싼 1kg에 46원씩 15일분 판매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표 3> 평양 농민시장 물가 비교

구분	2002년 2월	국정가격 (2002. 7. 1)	2003년 2월
쌀(1kg)	48~55원	44원	130~150원
옥수수(1kg)	20~32원	24원	75~85원
두부콩(1kg)	60~70원	40원	180~190원
식용유(1kg)	160~200원	150원	600~650원
계란(1알)	10~13원	8원	22~25원
명태(1마리)	100원	25원	300~400원
돼지고기(1kg)	160~180원	180원	360~380원
설탕(1kg)	130~150원	100원	400~420원
휘발유(1kg)	130~150원	-	330~350원
경유(1kg)	80~100원	-	280~300원
담배류(국산)	45~50원	-	70~80원
이발비	5~10원	10원	15~20원
환율(1달러)	220원	150원	670원

자료: 자체취합, 탈북자 면접조사

한편,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가격현실화와 함께 급여도 대폭 인상됐지만 실제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 곳은 많지 않다. 식량난도 부분적으로 개선되긴 했으나 공급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로 북한 주민의 실질구매력은 더 낮아졌으며,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농업 상품에 대한 정부조달 가격의 상승이 생산자로 하여금 정부의 국가배급체계를 통해 곡물을 분배하려는 유인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농업 산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화학비료, 농약, 양수기 등이 제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부문의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배급체계를 통해서는 필요 배급량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IV. 향후 전망

1. 시장거래를 통한 소득확보

북한 당국은 기존의 사회주의 시장의 의미에서 훨씬 진전된 ‘시장’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83년 중국 공산당의 결정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병존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시기의 시장인식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시장기능 인정은 유통부문에 한정된 소비품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기능의 전면적 인정은 아닌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비품 시장의 인정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거래를 통한 소득의 확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생산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2. 기업의 가격결정권 확대

북한이 『7.1경제조치』를 통해 제품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개선된 가격체계³⁹⁾를 계속 확대·강화시켜 나갈 경우에는 국정가격의 의미가 퇴색함으로써 기업이 일부 공산품 가격에 국한하여 제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가격제정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⁴⁰⁾ 상품가격을 수급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시도를 해 나갈 것이다.

38) 이와 관련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관료들까지 사석에서 “장사를 잘해 인민과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2003. 6. 26.

39)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 즈음 이미 상품가격이 계획가격이며 일단 제정된 가격은 확고적이며 경직적이며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 정확한 계획수행 실적의 평가 합리적 경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북한 내 물자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제도권내 국정가격에 의한 정상적인 유통은 위축되는 대신 암거래가 크게 늘어나 기존의 가격체계 및 질서가 올바른 경제운용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문란해졌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 제품의 질에 따라 값을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 비공식 유통시장의 제도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국정가격의 현실화가 제품 생산의 정상화로 이어짐으로써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저가의 의식주 가격이 정상원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와 근로의욕을 점차 살아나게 할 것이며,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격차가 해소됨으로써 물자유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영상점망으로는 물품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한 유통시장 거래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마당을 비공식 유통시장에서 공식 유통시장으로 인정하는 제도화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4. 유통시장의 개선과 북한 경제개혁

북한이 농민시장 운영에 변화와 함께 ‘시장’을 경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을 위한 물자공급과 유통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시장의 시장으로의 개칭이나, 종합시장의 개설만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향후에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부적 경제관리·운영체제를 보완·개선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과감한 유통분야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북한 내부 경제개혁의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무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0) 북한 국가가격제정국은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제가 세워져 있으며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 2002. 7. 26.

41)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2003 6. 6~6. 12.

첫째, 북한 주민들은 증가된 소득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할 것이다.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⁴²⁾

둘째, 당국에 의한 저가 분배제의 사실상 폐지와 소득의 임의적 자율적 처분 가능성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계지출 습관에 익숙해지게 만들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물질 위주의 임금노동제를 정착시킴으로서 물질적 자극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 유통시장의 거래활성화는 기업간 거래를 무현금거래에서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현금거래는 특히, 대외 합작·합영 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간 거래에 현금유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래 현금의 일부를 기업의 재량으로 필요 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 바, 이는 유통분야의 시장수용에서 궁극적으로 생산분야의 시장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사항

1. 결 론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계획경제의 분권화, 가격기능의 정상화, 임금보전에 대한 구매력 유지, 기업경영의 독자성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경제정책이 명령형 계획경제로의 완전한 복귀가 아니라 계획경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구마가 할당되던 상업망을 통해 일괄 분배해 주어 많은 양이 썩거나 보관을 잘못해 맛이 없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사다 군고구마로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는 매대가 생겨나고 있다.” 2003년 2월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의 북한 방문시 북측 안내원이 평양 거리의 군고구마 간이매대(판매대)에 대한 설명. 『중앙일보』, 2003. 2. 27.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자유화 조치와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가격체제를 정상화하고 극심한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나름대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며, 동유럽 개혁국가의 사례를 보아 가격자유화로 이행하기 위해 필히 요구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가격개선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갈 것으로는 예상된다. 국가의 가격제정원칙을 포기하지 않지만⁴³⁾ 상품가격을 수급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시도를 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 유통분야의 질서는 향후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국정가격의 현실화가 점차적으로 제품생산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저가의 의식주 가격이 정상원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와 근로의욕을 점차 살아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격차가 해소됨으로써 물자 유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그러나 경제개선조치 이후 생필품 등의 생산공급이 확대되지 않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가격 현실화와 통화량 증발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패는 결국은 정부의 물자 공급능력 증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43) 북한 가격제정국은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 멋대로 할 수는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으며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 2002. 7. 26.

44) 과거 국가가 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상점에도 식료품이 없어 농민시장에 의존했으나, 지금은 닭고기와 계란을 비롯한 식료품들이 그런 대로 공급되고 있는 국영상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일부 제품을 살 때를 제외하고는 과거처럼 농민시장에 자주 가지 않아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정책사항

북한 유통시장의 개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기업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상업유통망이 아직도 모두 국가소유 또는 집단소유이며, 북한 당국이 남한의 물품을 직접 거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유통분야의 실질적인 개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상당한 진전과 함께,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유통분야의 변화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국정가격의 현실화가 제품생산 및 공급의 원활화·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 및 생필품 위주로 대북 지원을 추진하고 이와 같은 지원 물품이 종합시장 등에서 직접 거래될 수 있도록 북한의 협조를 얻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임가공 생산을 포함, 생산·유통·판매가 결합된 형태로 추진하며, 북한의 도매시장과 연결, 남북한이 공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금노동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북한 경제협력사업에 임금의 직접지급 및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에도 금강산과 개성공단 및 평양 등지에 남북한 직거래 시장을 개설 추진하거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일정부분을 북한 내수시장에 직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넷째, 북한 상업유통 분야의 효율적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한 내수시장 진출에 대비한 남북한 직교역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한은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3. 8. 28)를 통해 상품 및 임가공 물품에 대한 직거래 방식의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교역상담소의 설치, 우편·통신연결, 육·해상 직접수송 및 물류기지 구축 등 물적 차원의 교역 인프라

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적 차원에서도 직교역 대상 물품 및 임가공 품목의 범위, 원산지 확인, 대금결제방식에 대한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북한 지역에서 상품유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외부로부터 자본과 물자기술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여건 창출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